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047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박○○, 윤○○
피고, 피항소인 B시장
소송대리인 ○○○○공단 담당변호사 최○○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1158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에서는 화력발전을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폐열발전은 '화석연료의 이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복합화력발전소의 1차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와 1차 발전 후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하여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는 서로 구분되는 독립된 발전설비들인 점, 화력발전 설비 없이 독립 운영되는 폐열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폐열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¹⁾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폐열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폐열의 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



발전 생산전력에 대하여 오염자부담원칙 등을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 방법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체의 법질서 안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폐열을 이용하는 2차 발전까지 화력발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서 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에서 이루어진 2차 발전은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지역 균형개발 재원 마련'이라는 지역자원 시설세의 사용목적을 바탕으로 과세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위 2차 발전에 대하여까지 부과된 이 사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

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체적 검토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①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 등 화력 발전설비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1차 발전)한 다음, ② 가스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된 배기열을 포집해 물을 끓여²⁾ 발생시킨 증기로 증기터빈 등 폐열 발전설비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2차 발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된 배기열을 이용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구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 균

2) 배기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물을 끓인다.



형개발 재원 확보의 목적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그 입법목적은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화력발전 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폐열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과 달리 이 사건 발전소의 2차 발전은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1차 발전을 토대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전소의 2차 발전 과정 자체에서 환경오염이 직접적으로 유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차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검토 결과

이와 같이 이 사건 발전소에서 이루어진 폐열발전을 화력발전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로부터 생산된 전력까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

판사 이○○

판사 황○○